

활기찬 경남

행복한 도민



경상남도

[www.gyeongnam.go.kr](http://www.gyeongnam.go.kr)

공보

제2632호 2023. 9. 19.(화)

**행 정 예 고**

제2023-40호 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」 일부개정 행정예고…………… 2

행 정 예 고

● 경상남도 행정예고 제2023-40호

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」 일부개정 행정예고

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9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예 규 명 :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

2. 개정이유

- 지도자·선수의 권리와 의무사항 명확화 및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하여 도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 도모

3. 주요내용

- 감독 채용 시 공개모집 방법의 근거 규정 추가(안 제3조)
- 지도자 및 선수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) 반영(안 별지 제2호서식)
- 지도자 및 선수 서약서에 품의 유지 및 청렴 서약서 반영(안 별지 제2호서식)
-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범위 확대(안 별표 1)
- 대회출전비 중 숙박료 지급기준 개정(안 별표 2)

4. 의견제출

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10. 9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(체육지원과 체육행정파트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수 정 사유

-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보내실 곳 :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체육행정파트
  - 주 소 : (51154)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(사림동)
  - 전 화 : 055-211-4715 (FAX : 055-211-4719)
  - E-mail : bounce0303@korea.kr

- 붙임**
1. 일부 개정안 1부.
  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  3. 관계 법령 1부.

## 경상남도 예규 제 호

###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

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임용 및 자격요건), 별지 제2호서식, 별표 1,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<별 지>

**제3조(임용 및 자격요건)** ① 경기부의 지도자는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은 공개모집하고, 코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.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을 준용한다.

② 선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하되, 도내 지역 출신 선수를 우선 채용한다.

1.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상위입상자
2.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자

③ 경기부의 지도자 및 선수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2. 채용신체검사서 1부
3. 최종학교졸업(예정)증명서 1부
4.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실적증명서(지도자) 각 1부
5. 경기실적증명서 및 이적동의서(해당선수) 각 1부
6. 그 밖에 단장이 요구하는 서류

④ 지도자 및 선수와 입단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체결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 (제3조 관련)

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표준계약서

경상남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자  
(이하 "지도자 및 선수" 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 
약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계약은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로서 선수단 활동을  
하고, 도지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,  
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"직장운동경기부"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 
운동부로서, 대한체육회 「경기인 등록규정」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 
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.

② "지도자 및 선수"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도자 및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, 직장운동경기부와  
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계약기간 및 적용범위)**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, 본  
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.

② 도지사가 대회 규정,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,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 
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(경기인 등록규정 등)하여야 하는 경우,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 
또는 계약이 우선한다.

(확인: 지도자 및 선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명)

**제4조(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)** ① 지도자 및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



-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(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
- ④ 도지사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7조(연차유급휴가)** ① 근속년수,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.

- ②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및 선수단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.
-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.

**제8조(도지사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)** ①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,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급,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.
- ③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.
- ④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,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, 성희롱,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.
- ⑥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-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, 승부조작, 심판매수,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
  - 2. 금품수수, 횡령 배임, 회계부정, 직무태만, 음주운전, 음주소란 행위,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
  - 3.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
  - 4. 타 선수에게 폭력·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
  - 5.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- 6. 대한체육회, 시도체육회, 회원중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

**제9조(지도자 및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)**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도지사와 약정된 후원금,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급,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·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, 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③ 지도자 및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.
- ④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지도자 및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도지사와의 협의되지 않은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 1.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-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, 승부조작, 심판매수,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
  2. 금품수수, 횡령 배임, 회계부정, 직무태만, 음주운전, 음주소란 행위,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
  3.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
  4. 타 선수에게 폭력·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
  5.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6. 대한체육회, 시도체육회,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
- ⑥ 지도자 및 선수는 계약기간 중 도지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경상남도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지도자 및 선수는 도지사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 착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 단,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10조(급여 및 지급방법, 시기 등)** ① 계약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 (한글) \_\_\_\_\_ 원(₩000,000,000)을 연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정액으로 매월 25일 지도자 및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. 단, 지도자 및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소속 경기부를 탈퇴할 경우 및 중도입사일 경우는 월별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도지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지도자 및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.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④ 결근, 지각,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(시간)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.



**제11조(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)**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.

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,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분배하기로 한다.

**제12조(영리활동)** 지도자 및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경상남도가 수익을 얻는 경우,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.

**제13조(비용의 부담 등)** ① 도지사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 및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(훈련)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, 지도자 및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도자 및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
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, 도지사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(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)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.

**제14조(지식재산권 등)** ① 도지사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 및 선수의 본명, 사진, 초상, 필적 그 밖에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일성(identity)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,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경상남도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도자 및 선수의 활동 또는 경상남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(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)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. 다만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 다만 도지사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, 지도자 및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도자 및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 및 선수의 명예나 기타 지도자 및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5조(계약내용의 변경)**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**제16조(권리 등의 양도)** 도지사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도자 및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, 지도자 및 선수와 합의를 거쳐(또는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의를 받아)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 일부양도에는 지도자 및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.

**제17조(계약의 해지)** ①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,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
2. 지도자 및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3.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 및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 및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4. 경상남도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, 지도자 및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,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
5. 지도자 및 선수가 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」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
② 도지사, 지도자 및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,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)**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9조(비밀유지)**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.

**제20조(분쟁해결)**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 및 선수와 도지사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.

1.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(仲裁)
2.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(訴訟)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,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.

**제21조(부속 합의)** ① 도지사과 지도자 및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,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.

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.

**제22조(기타)**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 
도지사과 지도자 및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0000년 00월 00일

경 상 남 도 지 사	
주 소	
성 명	(인)

지 도 자 및 선 수	
주 소	
생년월일	
성 명	(인)

## 품의유지 및 청렴 서약서

본인은 경남도청 소속 운동경기선수로서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해지 및 불이익 처분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.

1.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.
2. 성 비위, 음주운전,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횡령, 채용비리, 선수단 내 괴롭힘(갑질) 등을 하지 않는다.
3.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평소에는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주요대회에 앞서서는 합숙훈련에 필히 참가한다.
4.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자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.
5. 월 3일 이상 훈련에 불참 또는 주2회 이상 무단이탈하지 않는다.
6.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지 않는다.
7. 단장의 동의 없이 타 시도 소속으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.
8. 경남도청 및 해당 연맹의 각종 행사 참여 요청 시 참여한다.

20 년 월 일

성명

(인)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##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 연봉 획정표

### ○ 지도자

특급	A급	B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경력</li> <li>·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경력</li> <li>·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</li> <li>·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경력</li> <li>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대표선수 경력</li> <li>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</li> <li>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</li> <li>· <u>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</u> <u>도지사가 판단한 자</u></li> </ul>
4,800만원 이상	3,600~6,000만원	2,400~5,400만원

### ○ 선 수

특급	A급	B급	C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</li> <li>·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 국가대표 선수</li> <li>·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</li> <li>·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</li> <li>· 전 국가대표 선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</li> <li>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유망주</li> <li>· <u>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</u> <u>있다고 감독이 추천한 자</u></li> </ul>
6,000만원 이상	4,800~8,400만원	3,000~6,000만원	2,400~4,800만원

## 별표 2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 참가경비 지급기준

### ○ 지도자

(단위 : 원)

구 분	식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비 (1일당)
지급액	20,000	10,000	<u>실비</u> (상한액: 서울특별시 100,000, 광역시 80,000, 그 밖의 지역은 70,000)	10,000

※ 숙박료의 경우, 지도자는 1인 1실 사용 감안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

※ 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시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(6급 이하 공무원)을 준용한다.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**○ 선 수**

(단위 : 원)

구 분	식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비 (1일당)
지급액	20,000	10,000	30,000	10,000

※ 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시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(6급 이하 공무원)을 준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**11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제3조(임용 및 자격요건)**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<b>제3조(임용 및 자격요건)</b> ① 경기부의 지도자는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은 공개모집하고, 코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.</p> <p>② 선수는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하되, 도내 지역 출신 선수를 우선 채용한다.</p> <p>1.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상위입상자</p> <p>2.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자</p> <p>③ 경기부의 지도자 및 선수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지원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</p> <p>2. 채용신체검사서 1부</p> <p>3. 최종학교졸업(예정)증명서 1부</p> <p>4.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실적 증명서(지도자) 각 1부</p> <p>5. 경기실적증명서 및 이적동의서(해당선수) 각 1부</p> <p>6. 그 밖에 단장이 요구하는 서류</p>	<p><b>제3조(임용 및 자격요건)</b> ① 경기부의 지도자는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은 공개모집하고, 코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. <u>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「경상남도 공무원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② 선수는 <u>18세</u>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하되, 도내 지역 출신 선수를 우선 채용한다.</p>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④ 지도자 및 선수와 입단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체결한다.		

**②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표준계약서(별지 제2호서식)**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<u>입 단 계 약 서</u></p> <p>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」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경남도청 000 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‘지도자’ 또는 ‘선수’라 한다.)는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.</p> <p><b>제1조(계약당사자)</b> (도지사) 경상남도지사 000 (지도자 및 선수)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년월일 : 주 소 :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b>제2조(계약기간 및 근무장소)</b> ① 계약기간은 <u>    </u>년 <u>    </u>월 <u>    </u>일부터 <u>    </u>년 <u>    </u>월 <u>    </u>일까지로 하며 1년 단위로 계약한다. ② 근무장소는 경상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팀으로 한다.</p>	<p><u>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표준계약서</u></p> <p>경상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지도자 및 선수” 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본 계약은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로서 선수단 활동을 하고, 도지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,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① “직장운동경기부”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, 대한체육회 「경기인 등록규정」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. ② “지도자 및 선수”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 지도자 및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,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<b>제3조(계약기간 및 적용범위)</b>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,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. ② 도지사가 대회 규정,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,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(경기인 등록규정 등)하여야 하는 경우,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. (확인: 지도자 및 선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명)</p>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<b>제3조(근무시간 및 휴게시간)</b> 근무시간은 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」 제5조에 의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단 종목별 운영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5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)</b> ① 근무일은 월요일~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시간은 1일 <u>    </u>시부터 <u>    </u>시까지, 1주 40시간 이내로 하되, 집중훈련기간은 주 6일, 1주 40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휴게시간은 <u>    </u>시부터 <u>    </u>시(<u>    </u>시간)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.</p> <p>③ 지도자 및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,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·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단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.</p> <p>⑥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로 인한 연장, 야간,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·동의를 득하여야 하며, 도지사의 승인·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.</p> <p>(확인: 지도자 및 선수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서명)</span></p>	

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&lt;신 설&gt;</p> <p><b>제4조(근무일 및 휴무)</b> ①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. 단, 훈련 및 대회 출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」 제14조에 의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(5월1일)은 유급휴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<b>제5조(휴가)</b>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「근로기준법」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</p> <p><b>제6조(보수)</b>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금 _____ 원을 연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되, “지도자(선수)”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소속 경기부를 탈퇴할 경우에는 “도지사”는 “지도자(선수)”에게 월별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	<p>⑦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, 야간,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(확인: 지도자 및 선수 _____ 서명)</p> <p><b>제4조(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)</b> ① 지도자 및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지사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</li> <li>2. 도지사와 약정한 훈련참가</li> <li>3. 도지사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</li> <li>4. 도지사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(단,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,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, 팬 서비스 활동,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.)</li> </ol> <p>② 근무지(근무장소) :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도자 및 선수 활동 범위는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<b>제6조(유급휴일)</b>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(일요일)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.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.</p>	<p>개정안 제15조 (연차유급휴가)로 이동</p>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<b>제7조(준수사항)</b> “지도자(선수)”는 붙임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“지도자(선수)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“도지사”는 사안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거나 “도지사”가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“지도자(선수)”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② 근로자의 날</p> <p>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(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</p> <p>④ 도지사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.</p> <p><b>제7조(연차유급휴가)</b> ① 근속년수,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및 선수단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.</p> <p><b>제8조(도지사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)</b> ①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,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급,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,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</p>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&lt;신 설&gt;</p>	<p>⑤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, 성희롱,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⑥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-54호 지정 금지 약물 복용, 승부조작, 심판매수,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</p> <p>2. 금품수수, 횡령 배임, 회계부정, 직무태만, 음주운전, 음주소란 행위,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</p> <p>3.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</p> <p>4. 타 선수에게 폭력·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</p> <p>5.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</p> <p>6. 대한체육회, 시도체육회,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</p>	
<p><b>제8조(제계약)</b> 계약만료 후에는 제계약에 있어서 “도지사”가 우선권을 가진다.</p>	<p><b>제9조(지도자 및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)</b>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도지사와의 약정된 후원금,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급,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②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·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, 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③ 지도자 및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.</p>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신 설>	④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 동안 제4조 제1항의 지도자 및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도지사와의 협의되지 않은 지도자 및 선수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.	
<신 설>	⑤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1.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-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, 승부조작, 심판매수,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. 금품수수, 횡령 배임, 회계부정, 직무태만, 음주운전, 음주소란 행위,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.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. 타 선수에게 폭력·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.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. 대한체육회, 시도체육회,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	
<신 설>	⑥ 지도자 및 선수는 계약기간 중 도지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경상남도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
<신 설>	⑦ 지도자 및 선수는 도지사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 착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 단,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.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0조(급여 및 지급방법, 시기 등)</b> ① 계약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 (한글) 원(W00 0,000,000)을 연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정액으로 매월 25일 지도자 및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. 단, 지도자 및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소속 경기부를 탈퇴할 경우 및 중도입사일 경우는 월별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지도자 및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.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④ 결근, 지각, 조퇴 등으로 제4조 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(시간)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⑤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1조(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급)</b>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.</p> <p>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,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분배하기로 한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2조(영리활동)</b> 지도자 및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도지사가 수익을 얻는 경우,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.</p>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3조(비용의 부담 등)</b> ① 도지사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 및 선수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(훈련)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, 지도자 및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도자 및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, 도지사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(총수입과 비용공제 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)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 및 지도자 및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4조(지식재산권 등)</b> ① 도지사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 및 선수의 본명, 사진, 초상, 필적 그 밖에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일성(identity)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,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물을 경상남도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도자 및 선수의 활동 또는 경상남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(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)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. 다만 도지사 및 지도자 및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 다만 도지사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, 지도자 및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도자 및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에서 지식재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 및 선수의 명예나 기타 지도자 및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신 설>	<p><b>제15조(계약내용의 변경)</b>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</p> <p>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</p>	
<신 설>	<p><b>제16조(권리 등의 양도)</b> 도지사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도자 및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, 지도자 및 선수와 합의를 거쳐(또는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의를 받아)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 일부양도에는 지도자 및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.</p>	
<신 설>	<p><b>제17조(계약의 해지)</b> ①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,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</li> <li>2. 지도자 및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</li> <li>3.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 및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 및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4. 경상남도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, 지도자 및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,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</li> <li>5. 지도자 및 선수가 경상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/ol>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&lt;신 설&gt;</p>	<p>② 도지사, 지도자 및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,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</p> <p><b>제18조(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)</b>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9조(비밀유지)</b>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.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20조(분쟁해결)</b>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 및 선수와 도지사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(仲裁)</li> <li>2.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(訴訟)</li> </ol> <p>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,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.</p>	

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현 행	개 정 안	비고										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9조(기타)</u>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」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와 “지도자(선수)”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</p> <p>붙 임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협의 계약합니다.</p> <p>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 경상남도지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 (성 명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</p>	<p><u>제21조(부속 합의)</u> ① 도지사 와 지도자 및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,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.</p> <p><u>제22조(기타)</u>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</p> <p>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</p> <p>도지사 와 지도자 및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</p> <p>0000년   00월   00일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margin: 5px 0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b>경 상 남 도 지 사</b> 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주 소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</td> </tr> <tr> <td>성 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인)</td> </tr> </table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margin: 5px 0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b>지 도 자 및 선 수</b> 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주 소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</td> </tr> <tr> <td>생년월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성 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인)</td> </tr> </table>	주 소		성 명	(인)	주 소		생년월일		성 명	(인)	
주 소												
성 명	(인)											
주 소												
생년월일												
성 명	(인)										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### ③ 품의유지 및 청렴 서약서

서 약 서	품의유지 및 청렴 서약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인은 ----- -----<u>계약해지하여도</u>----- -----서약합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~ 7.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-----<u>계약해지 및 불이익</u> <u>처분하여도</u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성 비위, 음주운전, 금품·향응 수</u> <u>수, 공금횡령, 채용비리, 선수단</u> <u>내 괴롭힘(갑질) 등을 하지 않는</u> <u>다.</u></p> <p>3. ~ 8. (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

### ④ 지도자 및 선수 연봉 획정표(제8조 관련) (별표 1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<p>○ 지도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특 급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A급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B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·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경력</td> <td>· 국제대회 3위 이내 입 상 경력</td> <td>· 국가대표 선수 경력</td> </tr> <tr> <td>·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경력</td> <td>· 전국체육대회 1위 입 상 경력</td> <td>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</td> </tr> <tr> <td>·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</td> <td>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</td> <td>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,800만원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600만원 ~ 6,000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400만원 ~ 5,4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특 급	A급	B급	·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경력	· 국제대회 3위 이내 입 상 경력	· 국가대표 선수 경력	·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경력	· 전국체육대회 1위 입 상 경력	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	·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	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	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	4,800만원 이상	3,600만원 ~ 6,000만원	2,400만원 ~ 5,400만원	<p>○ 지도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특 급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A급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B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· 국가대표선수 경력 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 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 · <u>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,800만원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600만원 ~ 6,000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400만원 ~ 5,4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특 급	A급	B급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· 국가대표선수 경력 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 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 · <u>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자</u>	4,800만원 이상	3,600만원 ~ 6,000만원	2,400만원 ~ 5,400만원	
특 급	A급	B급																								
·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경력	· 국제대회 3위 이내 입 상 경력	· 국가대표 선수 경력																								
·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경력	· 전국체육대회 1위 입 상 경력	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																								
·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	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	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																								
4,800만원 이상	3,600만원 ~ 6,000만원	2,400만원 ~ 5,4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
특 급	A급	B급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· 국가대표선수 경력 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 ·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 · <u>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자</u>																								
4,800만원 이상	3,600만원 ~ 6,000만원	2,400만원 ~ 5,4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

# 경 남 공 보

제2632호

2023. 9. 19.(화)

○ 선 수				○ 선 수			
특급	A급	B급	C급	특급	A급	B급	C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</li> <li>·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입상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 국가대표 선수</li> <li>·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회 1위 입상자</li> <li>·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</li> <li>· 전 국가대표 선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국규모 대회 3위 이내 입상자</li> <li>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유망주</li> </ul>	<p>(현행과 같음)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</li> <li>·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유망주</li> <li>· 팀 경기력 향상에 발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자</li> </ul>
6,000만원 이상	4,800만원 ~ 8,400만원	3,000만원 ~ 6,000만원	2,400만원 ~ 4,800만원	6,000만원 이상	4,800만원 ~ 8,400만원	3,000만원 ~ 6,000만원	2,400만원 ~ 4,800만원

**㉔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 참가경비 지급기준(제12조 관련) (별표 2)**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식 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간식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숙박료 (1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일 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 분	식 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 비 (1일당)	지급액	20,000	10,000	30,000	10,000	<p>○ 지도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식 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간식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숙박료 (1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일 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비</li> <li>(상한액:</li> <li>서울특별시 100,000,</li> <li>광역시 80,000,</li> <li>그 밖의 지역은 70,000</li> </ul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선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식 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간식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숙박료 (1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일 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 분	식 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 비 (1일당)	지급액	20,000	1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비</li> <li>(상한액:</li> <li>서울특별시 100,000,</li> <li>광역시 80,000,</li> <li>그 밖의 지역은 70,000</li> </ul>	10,000	구 분	식 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 비 (1일당)	지급액	20,000	10,000	30,000	10,000	
구 분	식 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 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급액	20,000	10,000	30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식 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 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급액	20,000	1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비</li> <li>(상한액:</li> <li>서울특별시 100,000,</li> <li>광역시 80,000,</li> <li>그 밖의 지역은 70,000</li> </ul>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식 비 (1일당)	간식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일 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급액	20,000	10,000	30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**관계법령**

**□ 국민체육진흥법**

○ 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7.>

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9. 3. 18., 2012. 2. 17.>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○ 제10조의5(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)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
2. 합숙소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3.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